

개인연금저축
21세기슈퍼골드연금보험

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

사 업 방 법 서

사 업 방 법 서

1. 보험종류의 세목 및 가입연령 등.

		가 ()	
21 (,)	55	15 ~ 45	- 1 : - 2 : 1
	60	15 ~ 50	
	65	15 ~ 55	
21 (,)	55	15 ~ 45	
	60	15 ~ 50	
	65	15 ~ 55	
21 ()	55	15 ~ 45	
	60	15 ~ 50	
	65	15 ~ 55	
21 ()	55	15 ~ 45	
	60	15 ~ 50	
	65	15 ~ 55	
21 , (I, II)	55		
	60		
	65		
21 , (I, II)	55		55
	60		60
	65		65
21 , (I, II)	55		55
	60		60
	65		65

2.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

가. 보험료 납입기간

10년납, 15년납, 20년납, 연금개시연령 - 5세납, 전기납

나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, 3개월납

3.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

월 100 만원이하 (단, 3개월납의 경우 300만원이하)

4. 배당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 배당

- (1)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 하며,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(2) (1)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거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.

나. 배당금 지급방법

가항의 배당준비금은 다음의 방법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

- (1) 계약소멸시 보험금등에 더하여 지급한다.

이 경우 배당준비금은 회사에서 정한이율(이보험의 "예정이율 + 이차배당률" 이하 같습니다)로 월단리, 연복리 방법으로 부리하여 계산한다.

(2) 제 2보험기간 1년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은 확정연금으로 분할하여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, 제 2보험기간 개시이후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은 매년 연금 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.

(3) 제 2보험기간 개시일까지 적립된 배당준비금은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등으로 지급하며, 제 2보험기간 개시 1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배당준비금도 "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"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등으로 지급한다.
단, 기본연금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(1)항의 규정을 적용한다

5. 실제물가상승률

가. 실제물가상승률은 제 2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
나. 실제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당기간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.

그러나, 해당기간의 최종월 지수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중 발표된 최종월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그 이전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.

6. 보험료소득공제등에 관한 사항

이 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연금액(배당금등 포함)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면제대상으로 한다.